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3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20. 6. 18. 경제제도개선과-41116)에 따라 제도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학생의 자격(안 제2조)

- 실제 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학생을 자격대상에서 제외함
- 종전의 자격(고등학생 평균등급 6등급 이내, 대학생 평점 2.5점 (C+) 이상, 도 단위 이상인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을 완화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 선발’하는 것으로 함

나.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함

다. 장학금액(안 제6조)

-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으로 하여 학비 장학금과 별개로 지급하고 지급액은 학기별로 정액으로 지급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 8. 9. ~ 2021.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대학생에게 지급하는**”을 “**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후 1개월 이내에**”를 “**이전까지**”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전까지**”를 “**후 1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5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제8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부문 (신청 직전 학기)	고등 학생	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대학생	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5미만
기능, 체육, 예능부문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 창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 없으나학장이 인정한특차
점 수		30	25	20	15	10

단,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최종 학기의 전체과목 중 60점 이상 과목수로 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2. (<u>생 략</u>)</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기 개시 <u>후 1개월 이내에</u> 선정하여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u> 추천한다. <u>다만, 예산의 절감과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u></p> <p>제4조(선발 및 심의) ① (<u>생 략</u>)</p> <p>②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p>	<p>제1조(목적) ----- <u>평창군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u> -----</p> <p>-----</p> <p>-----</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p> <p>-----</p> <p>-----<u>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u></p> <p>1. 2. (<u>삭 제</u>)</p> <p>제3조(추천) -----</p> <p>-----</p> <p>-----</p> <p>----- <u>이전</u> -----</p> <p><u>까지</u> -----</p> <p>----- <u><단서조항 삭제></u></p> <p>제4조(선발 및 심의) ① (<u>현행과 같음</u>)</p> <p>② -----</p>

사람을 매 학기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대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중·고등 학생에게는 공납금의 전액을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삭제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

----- 후 1개월 이내에 -----.

제5조(장학생의 정원) -----
-----,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

제8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으로 사용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발된
경우

② (생략)

<삭제>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선발당시 이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
- 나. 장학생의 정원(안 제5조)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
- 나. 안 제6조(장학금액)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학기별 정액 지급(고등학생 25만원, 대학생 100만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및 결과

- 장학금 예산액은 예년과 동일하게 100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함.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감액 지급하고자 함.
-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이장자녀 장학금	2021년	100,000	36,142 상반기 대학생 1,000천원*23명= 23,000천원 하반기 대학생 14명 = 13,142천원(집행예정)
	2020년	100,000	61,687 상반기 고등학생 공납금*3명= 1,687천원 대학생 1,000천원*31명= 31,000천원 하반기 대학생 1,000천원*29명= 29,000천원
	2019년	100,000	77,421 상반기 고등학생 공납금*9명= 5,000천원 대학생 1,000천원*30명= 30,000천원 하반기 고등학생 공납금*8명= 4,421천원 대학생 1,000천원*38명= 38,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재원은 전액 군비로 조성함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장 김진용
연락처	(033) 330 - 22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이장자녀 장학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세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

1.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장학금 지급 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 등

2) 중복지원 심사 기준

○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

- 등록금 :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2. 학자금 중복지원의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

1) 중복지원의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장학금(근로 대가성 장학금, 학생회 활동 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공로 장학금, 연구보조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 기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2020. 6. 18. 경제제도개선과-4116)

과 제	조치 권고사항	평창군 현황	
		현 행	변 경
①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에 대학생 포함 - 장학금의 정액 지급 가능 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대상에 대학생 포함, 학기별 100만원 지급 - 고등학생 공납금의 전액(무상교육으로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고등학생 장학금 학기별 25만원
②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및 기준별 배점 차등화 ※ 통·리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성적기준 운영 (고등학생 평균등급 6등급 이내, 대학생 평점 2.5점 이상, 도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입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성적기준 삭제 - 추천된 인원이 선발 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장학생을 선발함
③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제출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서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고 별지 서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성적증명서 혹은 특기 증명서류,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류만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④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학비 장학금을(전액) 받은 경우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지급 가능액에서 타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 지급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 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당없음 - 차액 지급 근거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하여 학비 장학금(지자체 타 장학금)과 별개로 지급
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의 통·리장 사직, 해촉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조례에 명확화 ※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불확정적 사유(불미스러운 행위 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이미 조례에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 생활비 장학금 지급에 따른 정지 사유 일부 삭제

[참고] 타 지자체 조례 발췌

□ 삼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 2021.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장학금”이란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장학금을 말한다.

가. 생활비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숙사 지원금, 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나. 등록비 장학금: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는 철원군 이·반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반장자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생활비를 말한다,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이·반장의 자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의 추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인 자

2. 반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 장학생의 자격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5. 해외대학 및 해외대학원

□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 2020. 6. 30.]

제6조 (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연 50만원
2. 대학생 연 200만원

□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 2021. 7. 1.]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연 50만원 이내)
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연 200만원 이내)